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94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대식·조정훈·이현승
고동진·김용태·송석준
유한홍·곽규택·김상훈
우재준·이만희·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 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 격사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신 설></u>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 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